

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 
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2019. 11. 26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4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(금)
-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(금)

### 2. 제안이유

주민자치회 설치 이후,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우리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총회 참석 주민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동일하게 개정  
(안 제2조제3호)
- 나. 주민자치회 수익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문 신설  
(안 제8조제2항)
- 다. 위원선정위원회 용어 개정 및 예비후보자 명수 제한 삭제  
(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, 안 제12조)

- 라.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 연임 시 절차 명확화(안 제13조제4항)
- 마. 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명확하게 규정 및 공익 실현 목적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규정(안 제14조제2항, 제3항)
- 바. 위원회 연임규정 명확화(안 제16조제1항 ~ 제3항)
- 사. 주민총회 의사정족수, 참여연령 등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(안 제23조제8항)
- 아.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물품 제작 근거 규정 신설(안 제23조제7항)
- 자. 주민자치활성화 및 자치회관 운영에 기여한 개인 등 포상 근거 규정 마련(안 제44조제6항)
- 차. 다른 동 주민자치회와 협업 근거 마련(안 제45조제3항)

#### 4. 관계법령

- 가. 「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~ 제29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# 가. 개정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 주민자치회 설치 이후,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주민총회 참석 주민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동일하게 개정 (안제2조 제3호)

현 행	개 정 안
「"주민총회"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.」	「"주민총회"란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.」

### ○ 주민자치회 수익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문 신설 (안 제8조제2항)

신설안	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민자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.
-----	---

### ○ 위원선정위원회 용어 개정 및 예비후보자 명수 제한 삭제

(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, 안 제12조)

현 행	개 정 안
선정위원회	추첨위원회
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,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<u>40 퍼센트 이내</u>	----- 100분의 40 이내. 다만, 총원의 100분의 40 에 미달될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수자 중 정원 범위 내 총원이 가능하다.

○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 연임 시 절차 명확화 (안 제13조제4항)

현 행	후단 신설안
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	——. 이 경우,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○ 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명확하게 규정 및 공익 실현 목적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규정 (안 제14조제2항, 제3항)

신설안	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,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----	--

○ 위원의 연임규정 명확화 (안 제16조제1항 ~ 제3항)

현 행	개 정 안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수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한 차례 연임 이후는 추첨방법에 따른다.	<p>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수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원은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, 구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11조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·위촉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.</p>

○ 주민총회 의사정족수, 참여연령 등을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

(안 제23조제8항)

현 행	개 정 안	신 설 안
<p>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 인구의 0.5퍼센트 이상 참석으로 연1회 주민총회를 개최한다.</p>	<p>① 주민자치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로 연 1회 주민총회를 개최한다.</p>	<p>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.</p> <p>⑧ 의사정족수, 참여연령,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</p>

다.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이후, 주민자치회 수익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문 신설하고,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 연임 시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.

##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(약칭: 지방분권법)

[시행 2018. 3. 20] [법률 제15501호, 2018. 3. 20, 일부개정]

**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**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**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**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
**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**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지방자치법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